###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40호, 2024. 8. 13.,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투자매매중개업, 증권발행) 02-2100-2652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사업보고서, 상장회사특례, 불공정거래) 02-2100-2688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파생상품) 02-2100-2654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집합투자, 신탁, 투자일임, 투자자문) 02-2100-2661

부칙 <제34840호,2024.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결격사유 확대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직권말소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유사투자자문업자(유사투자자문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 로 법 제101조제9항제3호의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01조제6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102조제1항에 따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0. 21.>

#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

(단위: 억원)

		T	\ \ \ \ \ \ \ \ \ \ \ \ \ \ \ \ \ \ \ \	귀, 익전)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최저자기 자본
1-1-1	투자매매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0
1-1-2	투자매매업	증권	전문투자자	250
1-11-1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
1-11-2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100
1-111-1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75
1-111-2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전문투자자	37.5
1-12-1	투자매매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50
1-12-2	투자매매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125
1-13-1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1-13-2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25
11-1-1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
11-1-2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증권	전문투자자	100
11-11-1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80
11-11-2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40
11-111-1	어 이 게 이 하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0
11-111-2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구세등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전문투자자	15
11-112-1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사채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11-112-2	투자매매언(이수	사채권	전문투자자	20
11-12-1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11-12-2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50
11-13-1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11-13-2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10
11r-1r-1	투자매매업(인수	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투자자 및	60

	업은 제외한다)	증권	전문투자자	
	투자매매업(인수		일반투자자 및	
12-112-1	업만 해당한다)	사채권	전문투자자	60
	투자매매업(인수		44 / ///	
12-112-2	업만 해당한다)	사채권	전문투자자	30
	[ H 전 예정인터/		일반투자자 및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100
1 0 0	트카페레어	기기를 제시표	전문투자자	ГО
1-2-2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전문투자자	50
1-21-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50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1-21-2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전문투자자	25
	1 1 " " 1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900
			전문투자자	
1-3-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전문투자자	450
1-31-1	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450
	〒/小町町首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450
1_21_0	돈 기 베 베 어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저 ㅁ ㅌ 키 키	005
1-31-2	투자매매업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25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	이비트리키 피	
1-32-1	투자매매업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일반투자자 및	450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		
1-32-2	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전문투자자	225
1-32-2	구시[베베립 		<u> </u>	220
		해당한다)		
1 001 1		장외파생상품(통화ㆍ이자율	일반투자자 및	1.00
1-321-1	투자매매업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전문투자자	180
		해당한다)		
		장외파생상품(통화ㆍ이자율		
1-321-2	투자매매업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전문투자자	90
		해당한다)		
		법 제8조의2제5항 및 이 영		
1a-1-2	투자매매업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매매	전문투자자	300
		체결대상상품		
0 1 1	<b>モカスかめ</b>		일반투자자 및	20
2-1-1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30
2-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15
2r-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5
			일반투자자 및	
2-11-1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10
2-11-2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5
	, , , , , ,	,,,,,,,,,,,,,,,,,,,,,,,,,,,,,,,,,,,,,,,		<u> </u>
	E.17 %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일반투자자 및	
2-12-1	투자중개업	의한다)	전문투자자	10
	E 13 % 1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_
2-12-2	투자중개업	의한다)	전문투자자	5
			일반투자자 및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10
2-13-2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5
$\frac{2}{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20
∠ ∠ <del>-</del> 1	十四る川首	0 川 1 0 0 白	린민푸시스 롯	۷0

			전문투자자	
2-2-2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전문투자자	10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2-21-1	투자중개업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10
0 01 0	트 기 조 게 시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 , ,	
2-21-2	투자중개업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5
0 0 1	티기즈케어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100
2-3-1	투자중개업	8 日 <b>日</b> 7 8 7 8 1	전문투자자	100
2-3-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전문투자자	50
2-31-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50
	т то т п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31-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전문투자자	25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 , ,	
2-32-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일반투자자 및	ΕO
2-32-1	구작궁계립	를 기조자산으로 아픈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50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		
2-32-2	투자중개업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전문투자자	25
	1 / 1 0 / 11 日	해당한다)		20
		장외파생상품(통화ㆍ이자율		
2-321-1	투자중개업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일반투자자 및	20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통화ㆍ이자율		
2-321-2	투자중개업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전문투자자	10
		해당한다)		
	트리 즈네이	법 제8조의2제5항 및 이 영		000
2a-1-2	투자중개업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매매	전문투자자	200
2i-11-2i	투자중개업	체결대상상품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30
21 11 21	<u> </u>			30
3-1-1	집합투자업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	일반투자자 및	80
	н н т т н	투자기구	전문투자자	
0 11 1	기원도기시	법 제229조제1호・제5호에	일반투자자 및	4.0
3-11-1	집합투자업	따른 집합투자기구	전문투자자	40
3-12-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집	일반투자자 및	20
3-12-1	省省十个日	합투자기구	전문투자자	20
3-13-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집		20
0 10 1	ннТЛН	합투자기구	전문투자자	۵0
	_	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일반투자자 및	
4-1-1	신탁업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자	250
		신탁재산	CC   / 1/1	
		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	, .
4-1-2	신탁업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자	125
		신탁재산	Alm # -2 -2 -2	
4-1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 ' ' ' ' '	130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4-1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전문투자자	65
		따른 신탁재산		
4-12-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일반투자자 및	120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	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자	
4-12-2	신탁업	법 제103조차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		호부터 따른	전문투자자	60
4-121-1	신탁업	법 제103조차 제6호까지의 신탁재산		호부터 따른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4-121-2	신탁업	법 제103조차 제6호까지의 신탁재산		호부터 따른	전문투자자	50

#### 비고

- 1. 제7조제1항의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1-1-1 또는 1-1-2의 금융투자업인가 를 받은 자가 1-3-1 또는 1-3-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2. 1-11-1, 1-11-2, 1-111-1, 1-111-2, 1-12-1, 1-12-2, 1-13-1, 1-13-2, 11-11-1, 11-11-2, 11-111-1, 11-111-2, 11-112-1, 11-112-2, 11-12-1, 11-12-2, 11-13-1, 11-13-2, 12-112-1, 12-112-2, 2-11-1, 2-11-2, 2-12-1, 2-12-2, 2-13-1, 2-13-2 및 2i-11-2i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 3. 11r-1r-1은 제181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만 해당한다.
- 4. 2r-1-2는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제7 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5. 1a-1-2 및 2a-1-2는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 6. 2i-11-2i는 제179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같은 조 제1항제 1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7. 2-1-1, 2-1-2, 2-12-1 및 2-12-2는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는 제외하며, 2-1-1, 2-1-2, 2-11-1 및 2-11-2는 이 영 제179조에 따른 업무는 제외하다.
- 8.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11-13-1 및 11-13-2의 최저자기자본은 해당 최저자기자본의 2분의 1로 한다.
- 9.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제2 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적용할 때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이에 준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10. 삭제 <2015.10.23.>
- 11. 삭제 <2015.10.23.>
- 12.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13. 1a-1-2 및 2a-1-2의 투자자의 유형은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자간매 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 14. 법 제249조의3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자가 3-1-1,

3-11-1, 3-12-1, 3-13-1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이 표에 따른 자기자본은 이 표에서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에서 10억원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2. 28.>

# <u>**대주주의 요건**</u>(제16조제6항 관련)

구 분	요 건
1. 대주주가 「금융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
위원회의 설치 등	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따른 검사	
, , – – ,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사모집합투자기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는 제외하며, 이하	다.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금융기관"이라 한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다)인 경우	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
	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
	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
	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
	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입
	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
	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
	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
	친 사실이 없을 것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 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 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독립경영 집원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3호가목1)에 따른 독립경영 임원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 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2. 대주주가 제1호 가. 최근 / 외의 내국법인(기 배 이상 관전용사모집합투 족할 것 자기구와 투자목적 나. 최근 / 회사는 제외한다. 서 금융 이하 같다)인 경 다. 그 법역 우 열에 속
- 2. 대주주가 제1호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 외의 내국법인(기 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 관전용사모집합투 족할 것
  - 자기구와 투자목적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 회사는 제외한다.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이하 같다)인 경다. 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 역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3. 대주주가 내국인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으로서 개인인 경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4. 대주주가 외국 가. 인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인가 받으려는 금융투자업에 법령에 따라 설립 상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을 것 된 외국 법인(이하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

다)인 경우

- "외국법인"이라 한 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 족할 것
  -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 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 로부터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인 경우

5. 대주주가 기관전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용사모집합투자기구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 또는 투자목적회사 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 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 인 주주나 사원(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 거을 충족할 것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 · 다목 및 마목 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2호나목・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 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2호나목(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제4호다목·라목의 요건을 충

비고

- 1. 제16조제7항 각 호의 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마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하고,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마목 및 제4호라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 2.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 의 증갂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3. 제4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제4호 각 목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0. 21.>

# 등록업무 단위 및 최저 자기자본(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단위: 억원)

			'	
등록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투자대상자산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최저 자기자본
11	·	법 제229조제1호부터 제5호까	법 제249조의	시기시는
3-14-1	일반 사모집	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	2에 따른 적격	10
	합투자업	구	투자자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	일반투자자 및	2.5
5-1-1	투자자문업	상품 및 제6조의2 각 호에 따	전문투자자	
		른 투자대상자산		
	투자자문업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환매조건부 매매, 제6조의2제3		
5-21-1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파생	일반투자자 및	1
		결합증권과 유사한 증권으로서	전문투자자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증권		
	투자일임업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	일반투자자 및	
6-1-1		상품 및 제6조의2	전문투자자	15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선단무사사	
6-1-2	투자일임업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		
		상품 및 제6조의2	전문투자자	5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 비고

- 1.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8조제2항 제2호(3-14-1의 업무단위에 대해서는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를 말한다)에 따른 자기자본을 적용할 때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이에 준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2.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일 이후 등록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삭제 <2016. 7. 2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0. 21.>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제49조제7항, 제373조제6항 및 제374조제1항 관련)

- 1. 법 제77조의3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 1의2. 법 제77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지 못한 경우
- 1의3. 법 제7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한 경우
- 1의4. 법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한 경우
- 1의5. 법 제11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용 또는 투자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한 경우
- 1의6. 법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1의7. 법 제117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청약을 한 경우
- 1의8. 법 제117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한 경우
- 1의9. 법 제117조의7제8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1의10. 법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1의11. 법 제117조의7제10항 각 호 외의 방법으로 증권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
- 1의12. 법 제11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은 경우
- 1의13. 법 제117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상계·압류하거나 양도·담보제공한 경우
- 1의14. 법 제117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에게 우선 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 1의15. 법 제117조의9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 1의16. 법 제117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거나 그 밖에 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의17. 법 제117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발행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 1의18. 법 제117조의10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게재 내용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
- 1의19. 법 제11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지분을 매도한 경우
- 1의20. 법 제117조의10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지 않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양도한 경우
- 1의21. 법 제117조의10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의22. 법 제117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 1의23. 법 제117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의24. 삭제 <2019. 6. 25.>
- 1의25. 법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의26. 법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경우
- 1의27.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을 한 경우
- 1의28. 법 제249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의29.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3. 삭제 <2016. 7. 28.>
- 4. 삭제 <2016. 7. 28.>
- 5.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기별 업무보고서 및 월별 업무보고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 6.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서류 기재사항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 시키지 아니한 경우
- 7.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 등의 요구에 불응 한 경우
- 8.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9. 제7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됨에 따라 광고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9의2. 제7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업무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인터 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82조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조 각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11. 제92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12. 제9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 13.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14.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투자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 15. 제97조제4항에 따른 대여금 한도 또는 제7항에 따른 차입금 한도를 위반한 경우
- 16. 제97조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차입금을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한 경우
- 17. 제100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일임보고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18. 제100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투자일임보고서를 내주지 아니한 경우
- 19. 제104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하거나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한 경우
- 20.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수익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 20의2. 제118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 20의3. 제118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 21. 제1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괄신고서의 발행예정기간을 정한 경우
- 22. 제1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발행예정기간 중 3회 이상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 23. 제1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고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24. 제1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25.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괄신고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 일괄신고추가

서류를 기재한 경우

- 26. 제1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경우
- 27. 제131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표제부를 바꾸지 아니한 경우
- 28. 제133조를 위반하여 예비투자설명서를 작성한 경우
- 29. 제134조를 위반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작성한 경우
- 30. 제145조제1항에 따른 공고 방법을 위반하여 공고한 경우
- 31. 제1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공고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
- 32. 제1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33. 제147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조건을 변경한 경우
- 34. 제148조 본문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설명서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35. 제149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경우
- 36. 제160조를 위반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내준 경우
- 37. 제163조를 위반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작성한 경우
- 38. 제168조를 위반하여 사업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한 경우
- 39. 제170조를 위반하여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한 경우
- 40. 제178조를 위반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41. 제213조를 위반하여 자기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조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41의2. 제2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합병계약서의 작성 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고 합병한 경우
- 41의3. 제225조의2제2항(제233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41의4. 제2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고 합병한 경우
- 42. 제2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하지 않거나 그 변경된 기준가격을 다시 공고·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 43. 제2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44. 제26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45. 제270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46. 제27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신탁업자가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 47. 제282조제2항 또는 제28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제공한 경우
- 48. 제3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49.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 50.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10. 21.>
- 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12제6항 및 제275조제7항ㆍ제8항 관련)
- 1.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 2.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3.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6.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 7. 법 제406조제1항(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 8. 법 제406조제3항(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9. 법 제406조제4항(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 제92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 개업자를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11. 제9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 12.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13.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투자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 14. 제97조제4항에 따른 대여금 한도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차입금 한도를 위반한 경우
- 15. 제97조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차입금을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한 경우
- 16. 제213조를 위반하여 자기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조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17. 제2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하지 않거나 그 변경된 기준가격을 다시 공고·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 18. 제2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19. 제26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09.2.3>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9조제3항 관련)

- 1.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 2.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3.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6.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 7. 법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 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 8. 법 제2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 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9.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 10.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11.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 12.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 13.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 14.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09.2.3>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4조제3항 관련)

- 1.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 2.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3.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6.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 7. 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 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 8. 법 제2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 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9.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 10.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11.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 12. 제2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영업행위준칙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 13. 제28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평가기준을 공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 14. 제282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교기준을 함께 공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15. 제28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16.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 17.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 18.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09.2.3>

#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9조제3항 관련)

- 1.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 2.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3.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6.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 7. 법 제26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 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 8. 법 제26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 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9.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 10.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11.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 12. 제28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업무준칙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 13. 제28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정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14.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 15.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 16.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1, 10, 21.>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26제9항 관련)

- 1.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 2.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 령을 위반한 경우
- 3.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6.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 7. 법 제249조의14제9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의 열람·교부 청구 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 8. 법 제249조의14제10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의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8의2. 삭제 <2017. 2. 13.>
- 8의3. 삭제 <2017. 2. 13.>
- 9.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 10.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11.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 12. 제271조의20제4항제6호를 위반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 13.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1. 10. 21.>

#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09조제3항 관련)

- 1. 삭제 <2021. 10. 21.>
- 2.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 3.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4.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6.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7.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 8. 법 제290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9. 법 제2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 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10.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 11.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12.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 13. 법 제438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 14.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실적을 비교ㆍ공시한 경우
- 15. 제30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회의 조직을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 ·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16. 위탁받은 검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37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17.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 18.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 19.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19. 6. 25.>

####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13조제3항 관련)

- 1.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 2.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3. 삭제 <2019. 6. 25.>
- 4.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6.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7.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 8. 법 제305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9. 법 제3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 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10.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 11.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12.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 13. 삭제 <2019. 6. 25.>
- 14. 삭제 <2019. 6. 25.>
- 15.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 1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 17.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09.2.3>

####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24조제7항 관련)

- 1.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 2.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3.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6.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 7. 법 제333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8.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 9.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10.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 11.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제322조를 위반한 경우
- 12.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 13.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의2] <개정 2021. 10. 21.>

# **대주주의 요건**(제324조의3제5항 관련)

요건	구분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
	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
	려는 금액의 2배 이상일 것
	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1)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적
	기시정조치의 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해당 기준을 넘을 것
	2)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적
	기시정조치의 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융
	기관이 경영하는 업종과 유사한 업종을 경영하는 금융기
	관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넘을 것. 다만, 그
1. 대주주가「금융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 업종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위원회의 설치 등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가목・다목・
에 관한 법률」	라목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8조에 따라	다. 자본금 납입자금은 대주주의 출자능력을 초과하여 금융
금융감독원으로부	기관 등으로부터 단순 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
터 검사를 받는	업어음 · 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
기관인 경우	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출처가 명확할 것 라.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사실이 경영하려는 업
	무의 건전한 경영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
	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
	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신용평가회사의 공익성, 경영 건전성 및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제1호가목·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기 제1구리묘 미 기묘사 스키스 크즈된 기
	가.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법령에 따라 설립 된 외국기업인 경

우

- 가. 제1호가목·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 4. 대주주가 외국 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될 것
  - 다. 최근 3년간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 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 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의3] <개정 2016. 7. 28.>

#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4조의10제7항 관련)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 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4.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5. 법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 6.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 7.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8. 법 제335조의7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 9. 법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 10. 법 제335조의9에 위반하여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함에 있어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11. 법 제335조의10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12. 법 제335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
- 13. 법 제335조의15제2항제2호·제4호·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14. 법 제416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5. 법 제4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제8호 또는 신용평가업의 전부 양도·양수·폐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6. 법 제418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7. 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8. 법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 19.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 20.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 21.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 22. 제324조의2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
- 23. 제324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35조의3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24. 제32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내부통제기 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 25. 제324조의8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6. 제324조의9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09.2.3>

#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4조제7항 관련)

- 1.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 2.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3.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6.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 7.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 8.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9.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 제3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어음을 발행하거나 발행근거가 되는 원어음등을 매도, 담보제공 또는 어음관리계좌에 편입한 경우
- 11. 제32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 12. 제32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3. 제3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무담보 어음을 매도한 경우
- 14. 제328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보증어음 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한 경우
- 15. 제3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기간을 정한 경우
- 16. 제3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음관리계좌 수탁금을 운용·관리한 경우
- 17. 영업과 관련하여 제330조를 위반한 경우
- 18.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제332조를 위반한 경우
- 19. 제3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20. 제334조제4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시정에 필요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21.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 22.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15.3.3.>

#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7조제7항 관련)

- 1.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 2.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3.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6.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 7.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 8.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9.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 제3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콜거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한 경우
- 11. 제346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금중개를 한 경우
- 12. 제346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3.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 14.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09.2.3> 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9조제7항 관련)
- 1.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 2.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3.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6.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 7.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 8.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9.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 11.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개정 2009.2.3>

#### 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52조제7항 관련)

- 1.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 2.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3.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6.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 7.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 8.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9.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 11.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의2] <신설 2013.8.27>

# 시장개설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354조의3제1항 및 제3항 관련)

(단위: 억원)

		( 1 1 1 2/
시장개설 단위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최저자기자본
1e-1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 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 예탁증권	
1e-11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1,000
1e-12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 결합증권	1,000
2e-1	장내파생상품	3,000

# 비고

- 1. 거래소시장의 회원은 법 제38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거래소 결제회원과 매매 전문회원을 말한다.
- 2.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일 이후 거래소허가 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개정 2024. 7. 16.>

#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67조제7항 관련)

- 1. 법 제144조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2. 법 제149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3. 법 제157조를 위반하여 위임장용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4. 법 제163조를 위반하여 사업보고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5.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 6.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 령을 위반한 경우
- 7. 법 제17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 한 경우
- 7의2. 법 제173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된 거래계획을 비치하지 않거나 공 시하지 않은 경우
- 8.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9.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0.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1.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 12. 법 제39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 13.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 14.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15.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 16. 법 제4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 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17. 법 제412조제1항에 따른 회원관리규정·증권시장업무규정·파생상품시장업 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시장감시규정·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 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8. 법 제437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외국 거래소와 정보교환을 한 경우
- 19. 법 제438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 20. 제361조를 위반하여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 21.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과 관련하여 제362조를 위반한 경우
- 22. 구상권의 행사 및 공동기금의 보전과 관련하여 제363조를 위반한 경우
- 23.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 24.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 25.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개정 2023. 9. 19.>

#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376조제2항 관련)

- 1. 법 제4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2. 별표 5부터 별표 18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의2] <신설 2017. 10. 17.>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79조제1항 관련)

## 1. 과징금의 산정기준

####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 1) 기본과징금은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2) 부과기준율은 법 제4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등에 따라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4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고려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협조 여 부,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감경 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8 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 1)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때,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 2)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지급불능·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 2. 세부기준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개정 2024. 8. 13.>

#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87조제3항 관련)

- 1.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 내용의 심사,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 결정과 관련한 심사
- 2.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 3.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의 이행 여부와 인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
- 3의2.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검토 및 같은 항 후 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 4.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 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 5.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정보 요청
- 6. 법 제335조의8제5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사실 보고의 접수
- 6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
- 7.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의 보고의 접수
- 8.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
- 9. 법 제33조제1항(법 제335조의14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의 접수
- 10. 법 제33조제3항(법 제350조, 제357조 및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항 발생 보고의 접수
- 10의2.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월별 업무보고서 제출의 접수
- 11.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행위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분기별 종합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 12. 법 제36조(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투 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 13. 법 제4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 가.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보고의 접수
  - 나.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 다.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고(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겸영업 무의 공고로 한정한다)
- 14. 법 제41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법 제335조의10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 나.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 다.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공고(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부수업 무의 공고로 한정한다)
- 15. 법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법 제255조 및 이 영 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6. 법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기록·유지·관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회의 접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회 요청자에 대한 통보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제49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7. 법 제5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기록·유지·관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회의 접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조회 요청자에 대한 통보 및 같은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 18. 법 제5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표준약관이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 19.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따른 결산서류 제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시 (법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0.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 신고의 접수
- 21.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청산사무 및 재산의 상황의 검사
- 22. 법 제100조제5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의 접수
- 23.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을 경영하기 위한 신고의 접수 및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접수,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말소 및 같은 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
- 24.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 신고의 접수
- 25. 법 제114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인 선임 · 교체사실 보고의 접수
- 25의2. 법 제117조의4제4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 25의3. 법 제117조의6제1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보고의 접수
- 25의4. 법 제117조의11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의 설정
- 25의5. 법 제117조의1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위반자의 법 위반 사실 신고 접수
- 26.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접수 및 수리,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일괄신고서 제출의 접수 및 수리와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의 접수

- 27. 법 제120조제4항에 따른 철회신고서 제출의 접수
- 28.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및 그에 따른 정정신 고서 제출의 접수 및 수리,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의 접수 및 수리
- 29.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제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 설명서 추가제출의 접수
- 30. 법 제128조에 따른 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 접수
- 31. 법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비치 및 공
- 32.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의 신고인 등에 대한 보고·자료제 출 명령 등 조사업무의 집행
- 33. 법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증권신고의 신고인 등에 대한 공고 및 정정 명령
- 34. 법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의 접수
- 35. 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의 요구 및 그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의 접수
- 36. 법 제1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개매수설명서 제출의 접수
- 37. 법 제138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내용을 기재한 문 서 제출의 접수
- 38. 법 제139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개매수 철회신고서 제출의 접수
- 39. 법 제143조에 따른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출의 접수
- 40. 법 제14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 등의 비치 및 공
- 41. 법 제1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개매수자 등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등 조사업무의 집행
- 42.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 및 정정 명령
- 43.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 및 그 변동내용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보고의 접수
- 44. 법 제149조에 따른 보고서의 비치 및 공시
- 45. 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관련 보고서 제출자 등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등 조사업무의 집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정 명령.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6. 법 제153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의 접수
- 47. 법 제155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의견표명 내용을

- 기재한 서면 제출의 접수
- 48.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정정 제출 요구 및 그에 따른 정정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정정 제출의 접수
- 49. 법 제157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등의 비치 및 공시
- 50. 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등 조사업무의 집행,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 및 정정 명령
- 51.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제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 에 따른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제출의 접수
- 52. 법 제160조 전단에 따른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제출의 접수
- 53. 법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 접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의 요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거래소 송부
- 54. 법 제163조 전단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비치 및 공시
- 55. 법 제164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등 조사업무의 집 행,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 및 정정 명령
- 55의2. 법 제165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 55의3. 법 제165조의17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 55의4. 법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공고 및 정정 명령
- 55의5. 법 제16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보고의 접수
- 56. 법 제169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 또는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보고 명령
- 57. 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해당 법인에의 통보.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8. 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및 그 변동 내용 보고의 접수
- 58의2. 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비치 및 공시
- 58의3. 법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및 그 변동내용 보고의 접수
- 58의4. 법 제173조의3제1항에 따른 거래계획 보고의 접수
- 58의5. 법 제173조의3제4항에 따른 거래계획 철회 보고의 접수
- 58의6. 법 제173조의3제5항에 따른 거래계획(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철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비치 및 공시
- 58의7.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 58의8. 법 제180조의2제2항에 따른 정정 명령
- 58의9. 법 제180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 58의10. 법 제180조의5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 59.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제출의 접수(법 제182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등록여부 결정, 신청인에 대한 문서 통지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흠결에 대한 보완요구(법 제182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등록부 기재 및 등록내용의 공고(법 제182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록(법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9조의2.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 60. 법 제190조제3항에 따른 수익자총회 개최 승인(법 제201조제3항, 제 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및 제226 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61. 법 제191조제3항에 따른 수익증권 매수 연기 승인(법 제201조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62. 법 제192조제1항 단서의 투자신탁 해지사실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투자신탁 해지사실 보고의 접수
- 63. 법 제193조제5항 전단에 따른 투자신탁 합병사실 보고의 접수(법 제 204조제3항,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및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64. 법 제2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투자회사 해산에 관한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6항·제7항에 따른 청산인·청산감독인의 선임,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청산인·청산감독인의 해임·선임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기 촉탁(법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및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65. 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등본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결산보고서 제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청산인·청산감독인에 대한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의 결정(법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 제2항 및 제22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66. 법 제2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산인 선임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청산인의 해임 및 선임(법 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67. 법 제238조제8항 전단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업무 위탁 명령
- 68. 법 제240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선임 · 교체 사실 보고의 접수
- 69. 삭제 <2015.10.23.>
- 70. 법 제247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

- 71. 법 제248조제2항에 따른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제출의 접수
- 71의2. 법 제249조의3제4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 71의3. 법 제249조의4제6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 71의4.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내용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접수
- 71의5. 법 제249조의7제3항·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 71의6. 법 제24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 명령,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의적 경고 및 주의 조치, 같은 조 제4항에서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257조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및 법 제249조의9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3조에 따른 청문.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1의7. 법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고내용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접수
- 71의8. 법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 71의9. 법 제249조의12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 71의10. 법 제249조의14제7항 전단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보완 명령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치 명령
- 71의11. 법 제249조의15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등록 취소ㆍ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재무제표의 접수
- 71의12. 법 제249조의18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
- 71의13. 법 제249조의19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의 통보
- 71의14. 법 제249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해산명령,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라목에 따른 조치, 같은 항 제2호라목에 따른 조치,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3조에 따른 청문.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1의15. 법 제249조의22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

- 71의16. 법 제249조의23제5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 72. 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록 취소, 같은 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의적 경고 및주의 조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 취소시 청문 실시.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3. 법 제254조제4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등록 여부의 결정 및 등록 사실의 통지,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 74. 법 제257조제2항제5호·제6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257조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5. 법 제258조제4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및 같은 항 후 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 76. 법 제262조제2항제5호·제6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262조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7. 법 제263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 78. 법 제267조제2항제5호·제6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267조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9. 삭제 <2015.10.23.>
- 80. 삭제 <2015.10.23.>

- 81. 삭제 <2015.10.23.>
- 81의2. 삭제 <2015.10.23.>
- 82. 삭제 <2015.10.23.>
- 83. 삭제 <2015.10.23.>
- 84. 삭제 <2015.10.23.>
- 85.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86. 법 제2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 취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 취소시 청문 실시
- 87. 삭제 <2013.8.27>
- 87의2. 법 제3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 내용의 심사,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 결정과 관련한 심사
- 87의3. 법 제323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의 심사 및 같은 항후단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 87의4. 법 제323조의5제5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 이행 여부와 법 제 323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
- 87의5. 법 제323조의16제2항에 따른 거래정보 보고의 접수
- 87의6. 법 제323조의20제2항제5호·제6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제 4호·제5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323조의20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 87의7. 법 제335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 내용의 심사,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 결정과 관련한 심사
- 87의8. 법 제335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의 심사 및 같은 항후단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 87의9. 법 제335조의5제5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의 이행 여부와 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
- 87의10. 법 제335조의10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 87의11. 법 제335조의12에 따른 서류의 접수 및 공시
- 87의12. 법 제335조의15제2항제5호·제6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 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335조의15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 88. 법 제3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보고 및 신고 의 접수
- 89. 법 제34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

른 자료제출 명령

- 90. 법 제354조제2항제5호·제6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354조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91. 법 제35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 내용의 심사 및 같은 항 후 단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 92. 법 제359조제2항제5호·제6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359조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93. 법 제360조제4항 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 내용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 94. 법 제364조제2항제5호·제6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364조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95. 법 제365조제4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및 같은 항 후 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 96. 법 제369조제2항제5호·제6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369조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96의2. 법 제37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신청서 내용의 심사,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 결정과 관련한 심사
- 96의3. 법 제37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예비허가신청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예비허가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 96의4. 법 제373조의4제5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의 이행 여부와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
- 97. 법 제392조제3항에 따른 송부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시
- 97의2. 법 제411조제2항제5호·제6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411조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98. 법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의 접수(법 제335조의14제1 항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99. 법 제420조제3항제5호·제6호에 따른 조치.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0. 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 101. 법 제422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요구(법 제422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2. 법 제424조제1항에 따른 처분·조치 내용의 기록·유지·관리,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법 제422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회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법 제257조제5항, 제262조제5항, 제267조제5항, 제278조제6항, 제282조제3항, 제293조제4항, 제307조제4항, 제323조의20제5항, 제335조제5항, 제355조의15제5항, 제354조제5항, 제359조제5항, 제364조제5항, 제369조제5항, 제372조제2항 및 제4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3. 법 제4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요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업무의 집행.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 104. 법 제43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처리 및 문서 통지.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5. 법 제437조제1항에 따른 정보교환과 관련하여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의 정보제공 요청(제재기록 등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정보제공 요청만 해당한다) 접수 및 해당 정보의 제공.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6. 제7조제4항제5호가목에 따른 인정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료 제출의 접수
- 107. 제17조제5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 및 심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실지조사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조건 이행여부 확인
- 108. 제22조제4항에 따른 사실 여부의 확인 및 검토
- 109. 삭제 <2016. 7. 28.>
- 110. 삭제 <2016. 7. 28.>
- 111. 제36조제6항에 따른 정정공시 · 재공시 등의 요구
- 111의2. 제37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주식 취득의 확인
- 111의3. 삭제 <2021. 5. 18.>
- 112. 삭제 <2021. 5. 18.>
- 112의2. 제60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확인
- 113. 제77조의3제4항 전단에 따른 지정신청서 내용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 114.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기준 제정 변경 보고의 접수
- 115. 제85조제6호에 따른 거래의 확인
- 116. 제87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매매거래의 인정
- 117. 제99조제2항제3호아목에 따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인정
- 117의2. 제102조제2항에 따른 갱신 신청의 접수
- 118. 제10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인정
- 119. 제106조제4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차입 인정
- 120. 삭제 <2009.2.3>
- 121. 제10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신탁재산 상호간 자산매매거래 인정 및 같은 항 제4호차목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의 인정
- 122. 제118조제5항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 접수
- 122의2. 제118조의8제3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권고

- 122의3. 제118조의16제4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에 관한 서식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설정
- 122의4. 제131조제5항제2호, 제136조제2호 및 제174조제2호에 따른 기 재 또는 비치·공시 생략에 대한 확인
- 123. 제137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른 서류 제출의 접수, 같은 항 제3호 전단에 따른 내용의 제출의 접수,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결과 보고의 접수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서류 제출의 접수
- 124. 제138조제5호에 따른 조치(제176조의18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25. 제152조제6호에 따른 조치
- 126. 제159조제4호에 따른 조치.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27. 제166조제5호에 따른 조치
- 128. 제16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면제의 확인 및 인정
- 129. 제175조제5호에 따른 조치
- 130. 제176조제5항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 접수
- 131.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
- 132. 제186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한 심사
- 133. 대통령령 제3354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같은 영 시행 전 에 한 투자등록의 관리
- 134. 삭제 <2009.2.3>
- 135. 제20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안정조작신고서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안정조작보고서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안정조작신고서·안정조작보고서의 비치 및 공시
- 136. 제2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장조성신고서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장조성보고서 제출의 접수, 시장조성신고서·시 장조성보고서의 비치 및 공시
- 137. 제206조제4호에 따른 통지의 접수
- 137의2. 제211조의2제6항에 따른 고유등록번호의 부여
- 138. 제2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지승인신청서 제출의 접수
- 138의2. 제2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확인
- 139. 제233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 139의2. 제2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확인
- 140. 제250조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 141. 제262조제3항에 따른 기준가격 변경 보고의 접수

- 142. 제265조제5항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 접수
- 142의2. 제271조의2제10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접수
- 142의3. 제271조의4제4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 및 검토
- 142의4. 제271조의9제5항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 142의5. 제271조의12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
- 142의6. 제271조의13제4항에 따른 보고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 142의7. 제271조의20제2항제5호에 따른 보고의 접수
- 142의8. 제271조의21제8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
- 142의9. 제271조의26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조치
- 142의10. 제271조의28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
- 143. 제27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조치
- 143의2. 제275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실의 통지
- 144. 제279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조치
- 145. 제284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조치
- 146. 제286조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내용의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검토
- 147. 제289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조치
- 148. 제304조제3호에 따른 신청의 접수
- 148의2. 삭제 <2015.10.23.>
- 148의3. 제324조의4제5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 및 심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실지조사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조건 이행여부 확인
- 148의4. 제324조의6제3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권고
- 148의5. 제324조의10제5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조치
- 149. 제331조제1항에 따른 지점등의 설치 인가의 심사
- 150. 제334조제4항에 따른 계획 제출의 접수
- 151. 제344조제5항제2호·제3호에 따른 조치
- 152. 제346조제4항에 따른 중개업무내역 보고의 접수
- 153. 제347조제5항제2호·제3호에 따른 조치
- 154. 제349조제5항제2호·제3호에 따른 조치
- 155. 제352조제5항제2호·제3호에 따른 조치
- 156. 제370조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의 승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의 내용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흠에 대한 보완 요구
- 157. 제373조제5항제2호·제3호에 따른 조치
- 158. 제376조제1항제11호가목·나목에 따른 조치.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59. 제384조제2항에 따른 확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같

은 조 제6항에 따른 조치 요구의 접수,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조치 요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조치 권고

16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부터 제25호까지, 제25호의2부터 제25호의5까지, 제26호부터 제55호의5까지, 제56호부터 제58호까지, 제58호의2, 제58호의2부터 제55호의5까지, 제56호부터 제58호까지, 제58호의2, 제58호의3, 제59호부터 제68호까지, 제70호, 제71호, 제71호의2부터 제71호의16까지, 제72호부터 제78호까지, 제85호, 제86호, 제87호의2부터 제87호의12까지, 제88호부터 제96호까지, 제96호의2부터 제96호의4까지, 제97호, 제97호의2, 제98호부터 제108호까지, 제111호, 제111호의2, 제113호, 제114호부터 제119호까지, 제121호, 제122호, 제122호의2부터 제122호의4까지, 제123호부터 제133호까지, 제135호부터 제137호까지, 제138호, 제138호의2, 제139호, 제139호의2, 제140호부터 제142호까지, 제142호의2부터 제142호의10까지, 제143호부터 제148호까지, 제148호의3부터 제148호의5까지, 제149호부터 제15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제388조의2 관련)

#### 1. 일반기준

- 가. 부당이득액은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 또는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이하 "실현이익"이라 한다)·미실현이익 또는 위반 행위로 회피한 손실액(이하 "회피손실액"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나.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액에 그 이익을 포함한다.
  - 1) 위반행위자가 회사의 합병과정에서 유리한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합병비율을 변경시킨 경우: 그 합병비율 변경을 통해 얻은 이익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의 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파생상품을 보유함으로써 해당 파생상품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 그 파생상품의 평가이익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과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이익과의 차액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익
- 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법인 또는 개인이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액에 포함한다.
- 라. 법 제429조의2·제429조의3 또는 제443조에 따른 여러 개의 위반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犯意)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뤄진 경우 전체 위반행위기간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액은 모두 합산한다.
- 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액을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별로 각자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 바.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과 전체 위반행위기간 동안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의 개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실·행위(이하 "외부요인"이라 한다)로 인한 시세 변동이 결합되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분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다만, 외부요인이 사회통 념상 예견 가능하거나 위반행위자가 해당 외부요인을 위반행위에 이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권리락·배당락, 주가지수의 변동 등

에 의한 시세 변동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 1) 외부요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투자상 품의 시세 변동을 완전히 상쇄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요인이 발생 하기 직전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 2) 외부요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투자상 품의 시세 변동을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요인이 발생한 이후 의 시세 변동분은 3분의 1을 반영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 3) 외부요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투자상품의 시세 변동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 변동분은 2분의 1을 반영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 4) 외부요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투자상품의 시세변동에 준하는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 변동분 전부를 반영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외부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 변동분은 3분의 2를 반영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 2. 개별기준

- 가. 법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 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경우
  - 1) 실현이익은 위반행위자가 법 제173조의2제2항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이하 "정보이용금지 위반행위"라 한다)를 개시한 날부터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공개 이후 파생상품시장에서 법제173조의2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하 "장내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최초형성최고종가(상승세에 있던 최종가격의 흐름이 최초로 멈춘 날의 최종가격 또는 최초로 하락세로 돌아서는 날 전일의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형성된 날까지 매도한 장내파생상품등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실현이익 = (장내파생상품등의 가중평균 매도단가 - 장내파생상품등의 가 중평균 매수단가) × 매매일치수량 - 거래비용

2) 미실현이익은 위반행위자가 정보이용금지 위반행위를 개시한 날부터 파생 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공개 이후 파생상품시장 에서 장내파생상품등의 최초형성최고종가가 형성된 날까지 매도하지 않은 장내파생상품등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미실현이익 = (장내파생상품등의 최초형성최고종가 - 장내파생상품등의 가중평균 매수단가) × 보유수량 - 거래비용

3) 회피손실액은 위반행위자가 정보이용금지 위반행위를 개시한 날부터 파생 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공개 이후 파생상품시장 에서 장내파생상품등의 최초형성최저종가(하락세에 있던 최종가격의 흐름이 최초로 멈춘 날의 최종가격 또는 최초로 상승세로 돌아서는 날 전일의 최종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형성된 날까지 매도한 장내파생상품등에 대하 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회피손실액 = (장내파생상품등의 가중평균 매도단가 - 장내파생상품등의 최초형성최저종가) × 매도수량 - 거래비용

- 나. 법 제174조를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경우
  - 1) 실현이익은 위반행위자가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이하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 위반행위"라 한다)를 개시한 날부터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의 공개 이후 증권시장에서 특정증권등의 최초형성최고종가가 형성된 날까지 매매한 특정증권등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실현이익 = (특정증권등의 가중평균 매도단가 - 특정증권등의 가중평균 매수단가) × 매매일치수량 - 거래비용

2) 미실현이익은 위반행위자가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 위반행위를 개시한 날부터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의 공개 이후 증권시장에서 특정증권 등의 최초형성최고종가가 형성된 날까지 매도하지 않은 특정증권등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미실현이익 = (특정증권등의 최초형성최고종가 - 특정증권등의 가중평균 매수단가) × 보유수량 - 거래비용

3) 회피손실액은 위반행위자가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 위반행위를 개시한 날부터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의 공개 이후 증권시장에서 특정증권등의 최초형성최저종가가 형성된 날까지 매매한 특정증권등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특정증권등의 최초형성최저종가가 형성된 날 전에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 직전의 최종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초형성최저종가로 보되, 매매거래 정지로 특정증권등이 상장폐지된 경우에는 장내파생상품등의 최초형성최저종가는 0원으로

하다.

회피손실액 = (특정증권등의 가중평균 매도단가 - 특정증권등의 최초형성 최저종가) × 매도수량 - 거래비용

- 다. 법 제176조를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 등을 한 경우
  - 1)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통해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 가) 실현이익은 위반행위자가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의 무를 위반한 행위(이하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라 한다)를 개시한 날부터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종료한 날까지(이하 "시세조종기 간"이라 한다) 매매한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 품(이하 "상장증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다.
    - 실현이익 = (상장증권등의 가중평균 매도단가 상장증권등의 가중평균 매수단가) × 매매일치수량 거래비용
      - (1) 위반행위자가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할 것을 예정하고 시세조 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개시한 날 전에 상장증권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위 계산식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 (2) 위반행위자가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상장증권등으로서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장증권등의 가중평균 매수단가는 시세조종행위 금지의무 위반행위의 개시일 전일의 해당 상장증권등의 최종가격을 매수단가로 하여 산정한다. 나)에 따른 미실현이익을 산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나) 미실현이익은 위반행위자가 시세조종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매도하지 않은 상장증권등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위반행위자가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할 것을 예정하고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개시한 날 전에 상장증권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 미실현이익 = (시세조종기간이 끝나는 날의 상장증권등의 최종가격 상 장증권등의 가중평균 매수단가) × 보유수량 - 거래비용
    - 다) 제1호나목에 따른 이익을 산정할 때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상장증권등의 최종가격은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개시한 날 전일의 상장증권등의 최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2)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시세의 하락을 방어한 경우
  - 가) 실현이익은 위반행위자가 시세조종기간에 매매한 상장증권등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실현이익 = (상장증권등의 가중평균 매도단가 시세조종기간 중의 상장 증권등의 최저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매매일치수량 -거래비용
  - 나) 미실현이익은 위반행위자가 시세조종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매도하지 않은 상장증권등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미실현이익 = (시세조종기간이 끝나는 날의 상장증권등의 최종가격 시 세조종기간 중의 상장증권등의 최저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보유수량 - 거래비용
  - 다) 제1호나목에 따른 이익을 산정할 때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상장증권등의 최종가격은 시세조종기간 중 상장증권등의 최저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3)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통해 시세를 하락시킨 경우의 부당이득액은 제1호나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에 따른 이익을 산정할 때 시세조 종행위금지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상장증권등의 최종가격은 시세조종행 위금지 위반행위를 개시한 날 전일의 상장증권등의 최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법 제178조를 위반하여 부정거래행위 등을 한 경우
  - 1)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이하 "부정 거래행위금지 위반행위"라 한다)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모집금액·판매금액·매출액 전액을 부당이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바 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 2) 1)을 제외한 부정거래행위금지 위반행위를 한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부당이득액의 산정은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준용한 다.
  - 3) 2)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 금융투자상품이 비상장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수단가를 산정한다.
    - 가) 부정거래행위금지 위반행위 직전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정상적으로 거 대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례의 매수단가
    - 나) 부정거래행위금지 위반행위 직전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정상적으로 거 대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비상장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액면

금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 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금액 중 높은 금액

- 마. 법 제178조의2를 위반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
  - 1) 법 제178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의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은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 2) 법 제178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의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은 다목 및 라목을 준용한다.
- 바.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 1) 실현이익은 위반행위자가 법 제180조에 따른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이하 "공매도등"이라 한다)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개시한 날부터 공매도 주문에 따른 결제일 이후 증권시장에서 제208조제1항 각 호의 상장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의 최초형성최저종가가 형성된 날까지 취득(상 장증권을 차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상장증권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실현이익 = (상장증권의 가중평균 공매도단가 - 상장증권의 가중평균 취 득단가) × 매매일치수량 - 거래비용

2) 미실현이익은 위반행위자가 공매도등을 개시한 날부터 공매도 주문에 따른 결제일 이후 최초형성최저종가가 형성된 날까지 취득하지 않은 상장증권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미실현이익 = (상장증권의 가중평균 공매도단가 - 상장증권의 최초형성최 저종가) × 보유수량 - 거래비용

사. 법 제180조의4를 위반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부당이득액은 제208조의4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다음의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실현이익 = (주식의 가중평균 공매도단가 - 취득한 주식의 취득단가) × 보 유수량 - 거래비용

## 비고

- 1. "가중평균 매도단가"란 실제 매도가액을 매도수량으로 가중평균한 단가를 말한다.
- 2. "가중평균 공매도단가"란 실제 공매도가액을 매도수량으로 가중평균한 단가 를 말한다.

- 3. "가중평균 매수단가"란 실제 매수가액을 매수수량으로 가중평균한 단가를 말한다.
- 4. "가중평균 취득단가"란 실제 취득가액을 취득수량으로 가중평균한 단가를 말한다. 다만,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상장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상장증권 취득일 기준 거래소시장에서의 해당 상장증권의 최종가격을 취득단가로 본다.
- 5. "취득한 주식의 취득단가"란 법 제123조, 제129조, 제130조 및 제391조에 따라 공시되어 결정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을 말한다.
- 6. "매매일치수량"이란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더 적은 수량을 말한다.
- 7. "거래비용"이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를 위해 지출한 매매수수료, 증권거 래세액, 농어촌특별세액 및 그 밖에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를 위해 든 비용 (미실현이익 산정 시 예상되는 거래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양도소득세, 이자 등 위반행위와 직접적 관련 없이 든 비용은 제외한다.
- 8. "보유수량"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 가. 제2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보유수량은 위반행위자가 장내파 생상품등 또는 특정증권등의 최초형성최고종가가 형성된 날까지 보유한 장내파생상품등 또는 특정증권등의 수량을 말한다.
  - 나. 제2호다목1)나) 및 같은 목 2)나)에 따른 보유수량은 시세조종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유한 상장증권등의 수량을 말한다.
  - 다. 제2호바목2)에 따른 보유수량은 공매도한 상장증권의 수량에서 최초형성 최저종가가 형성된 날까지 취득한 상장증권의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 라. 제2호사목에 따른 보유수량은 공매도 수량과 취득한 주식의 수량 중 작은 수량을 말한다. 이 경우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주식의 수량에서 제외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이득액의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
- 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 제13호, 별표 11 제19호, 별표 12 제17호, 별표 13 제13호, 별표 14 제22호, 별표 15 제14호, 별표 16 제11호, 별표 17 제11호, 별표 18 제25호 관련)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 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공·누설하거나 요구한 경우
  - 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 정보등의 제공 요구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
  - 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 용한 경우 또는 그 거래정보등을 요구한 경우
  - 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 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 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 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유예하지 아니한 경우
  - 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경우
  - 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을 기록·관리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
- 2. 「형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나. 「형법」 제223조(같은 법 제214부터 제21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 다. 「형법」 제224조(같은 법 제214조 또는 제215조의 죄를 범할 목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 라.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마. 「형법」 제35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바. 「형법」 제359조(같은 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 사. 「형법」 제359조(같은 법 제35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

반한 경우

-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경우
  -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한 경우
  -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경우
  - 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 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과태료 금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액
가. 법 제33조제1항(법 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	법 제449조	6,000
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1항제13호	
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나. 법 제33조제2항(법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법 제449조	6,000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제1항제14호	
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경우		
다. 법 제33조제3항(법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법 제449조	3,000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제1항제15호	
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라. 법 제33조제4항(법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법 제449조	2,000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제1항제15호의2	
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마.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	법 제449조	10,000
지 않은 경우	제1항제16호	
바. 법 제3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	법 제449조	6,000
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	제1항제17호	
한 경우		
사. 법인인 자가 법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법 제	법 제449조	10,000
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	제1항제18호	
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아.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	법 제449조	5,000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제1항제18호	
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자.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	법 제449조	6,000
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19호	
차. 법인인 자가 법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	법 제449조	10,000
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	제1항제20호	
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법		
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		
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조		
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카.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법 제449조	5,000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	제1항제20호	다만, 임직
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		원의 경우에
항(법 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		는 2,000만
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		원으로 한
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		다.
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		
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		
사·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타. 삭제 <2021. 3. 23.>		
파. 삭제 <2021. 3. 23.>		
하.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또는 법 제	 법 제449조	6,000
52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않	제1항제23호	3,000
은 경우	7 II 7 II 2011	
거.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나	법 제449조	1,800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제3항제2호	
너. 삭제 <2021. 3. 23.>		
더.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법 제449조	6,000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	제1항제24호	
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6조제1항	법 제449조	6,000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미 법 제502 제1청 보무에 따로 보고로 된지 아기	제1항제25호	000
머.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	법 제449조	900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3항제4호	
버. 삭제 <2021. 3. 23.>		
서. 삭제 <2021. 3. 23.>		
어.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법 제449조	6,000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7호	
저. 법 제63조제1항(법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법 제449조	250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	제2항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		
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		
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처. 법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고객응대직원의 보호	법 제449조	1,800
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고객응대직원에게	제3항제4호의2	
불이익을 준 경우	22 2 440	2.000
커.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	법 제449조	6,000
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	제1항제28호의2 법 제449조	5,000
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항제29호	3,000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M1 8 M23-X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퍼. 법 제73조를 위반하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	법 제449조	1,800
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제3항제5호	,
허. 법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	법 제449조	6,000
여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은 경우	제1항제30호	
고. 법 제7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법 제449조	2,000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30호의2	
노. 법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법 제449조	6,000
드 비 케어크 케션(비 케100크 케어지, 제 ) 그 이 된 나	제1항제31호	2,000
도. 법 제87조제7항(법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49조	2,000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유지하지 않	제1항제32호	
은 경우 로. 법 제87조제8항(법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49조	6,000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여	제1항제33호	0,000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741 8 74100±	
모. 법 제90조제1항(법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49조	6,000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법 제186조제2항에	제1항제34호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영업보		
고서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		
성하여 제출한 경우		

보. 법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법 제449조	6,000
	제1항제34호의2	
소. 법인인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제2항	법 제449조제3	1,800
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항제5호의2	
Ŷ		
오. 법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	법 제449조제3	900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항제5호의2	
한 경우		
조. 법인인 자가 법 제10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	법 제449조제3항	1,800
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5호의3	
제출한 경우		000
초.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01조제3항 후단에 따른		900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제5호의3	
으로 제출한 경우 코. 법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	법 제449조	6,000
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제1항제34호의3	,,,,,,,,,,,,,,,,,,,,,,,,,,,,,,,,,,,,,,,
토. 법 제114조제1항 또는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449조	6,000
회계처리를 한 경우	제1항제35호	
포. 법 제117조의6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449조	900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3항제6호의2	
호. 법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	법 제449조	6,000
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35호의2	1.000
구. 법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거나		1,800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누. 법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3항제6호의3 법 제449조	6,000
		0,000
취하지 않은 경우 두. 법 제11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제1항제35호의3 법 제449조	10,000
경우	제1항제35호의4	10,000
루.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법 제449조	6,000
경우	제1항제35호의5	
무. 법 제117조의10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9조	6,000
	제1항제35호의6	
부. 법 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게재한 내용을 정	법 제449조	6,000
정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35호의7	0.555
수. 법 제11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매도한	법 제449조	6,000
경우	제1항제35호의8	1 000
우. 법 제117조의10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예탁	법 제449조	1,800
또는 보호예수하지 않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인	제3항제6호의4	
출한 경우		

주. 법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지체	법 제449조	6,000
없이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35호의9	,,,,,,,
추. 법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	, , , , , , , , , , , , , , , , , , , ,	6,000
은 경우	   제1항제35호의10	
쿠. 법 제117조의15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법 제449조	1,800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6호의5	
투. 법인인 자가 법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위반하	법 제449조	1,800
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3항제7호	
제출한 경우 푸.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H - 쾨 440 조	000
		900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	제3항제7호	
성하여 제출한 경우 후. 법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6,000
	제1항제36호	0,000
그. 법인인 자가 법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	, - ,	1,800
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또는 제	   제3항제8호	,
419조제5항(법 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제1항 후	, , , ,	
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		
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		
334조,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		
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경우	H] -1] 440 -7	000
느.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		900
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또	제3항제8호	다만, 임직
는 제419조제5항(법 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제1		원의 경우
항 후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		에는 360만
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		원으로 한
조, 제334조,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		다.
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		
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경우		
드. 법인인 자가 법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	법 제449조	6,000
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	제1항제37호	
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경우	31 3442	0.000
르.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	법 제449조	3,000

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제1항제37호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경우		
므. 법인인 자가 법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	법 제449조	6,000
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이나 법 제148조	제1항제38호	
에 따른 보고서 사본에 신고서 또는 보고서에 기		
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경우		
브.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	법 제449조	3,000
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이나 법 제	제1항제38호	
148조에 따른 보고서 사본에 신고서 또는 보고서		
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		
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경우		
스. 법 제1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이 아닌	법 제449조	3,000
의결권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8호의2	C00
으. 법인인 자가 법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법 제449조	600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즈.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제3항제8호의3 법 제449조	300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3항제8호의3	
츠. 법인인 자가 법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	법 제449조	6,000
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	제1항제39호의2	
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또	및 제39호의4	
는 법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크.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	법 제449조	3,000
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순보유잔고의	제1항제39호의2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및 제39호의4	
또는 법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		
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트. 법인인 자가 법 제18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	법 제449조	6,000
융위원회의 정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정명	제1항제39호의3	
령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를 한 경우	2 2	
프.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80조의2제2항을 위반하	법 제449조	3,000
여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	제1항제39호의3	
정명령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HJ -11440 -7	1 000
흐. 법 제1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	법 제449조	1,800
지 않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제3항제8호의4	

않은 경우	니 #11 4 4 O #	0.000
기. 법인인 자가 법 제180조의5를 위반하여 대차거	_ "	6,000
래정보를 보관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	제1항제39호의5	
지 않는 경우	ᇣᆁᄱᄭᅎ	2,000
니.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80조의5를 위반하여 대	,	3,000
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제1항제39호의5	
따르지 않는 경우 리 및 제1997 제9회(법 제970 국제9회에서 중요되는	비 -11440구	2,000
디. 법 제182조제8항(법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49조	3,000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제1항제40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H - 기 440 그	C 000
리. 법인인 자가 법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법 제449조	6,000
_ 을 사용한 경우 미.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1항제41호 법 제449조	3,000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1항제41호	3,000
- '경'를 사동인 경구 비. 법 제18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	법 제449조	10,000
관·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41호의2	,
시. 법 제190조제7항(법 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법 제449조	1,800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	제3항제9호	
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지 않은		
경우		
이. 법 제249조의7제3항 또는 제249조의12제2항을	법 제449조	3,000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제1항제41호의3 	,
경우	,,10 ,,11	
지. 법 제249조의14제7항을 위반하여 행위준칙을 제	법 제449조	3,000
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제3항제10호	
으로 보고한 경우	, - ,	
치. 법 제249조의15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	법 제449조	3,000
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	제3항제10호의2	
는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	및 제10호의3	
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키. 법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	법 제449조	6,000
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않거나 임직원에게	제1항제42호	
겸직하게 한 경우		
티. 법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	법 제449조	6,000
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않은	제1항제43호	
경우		
피. 법인인 자가 법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법 제449조	6,000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	제1항제44호	
칭을 사용한 경우	21 21 440 7	0.000
히.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	법 제449조	3,000
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	제1항제44호	
여 명칭을 사용한 경우	21 2 440 7	0.000
갸. 법 제3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않은 경	법 제449조	3,000
수 냐. 법 제3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등을 구분하여	제3항제11호	2,000
	법 제449조	3,000
보관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제4항을	제3항제12호 법 제449조	1,800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14호	
랴. 법 제3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	법 제449조	1,800
성 · 비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3항제15호	<i>c</i> 000
마. 법 제3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	법 제449조	600
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뱌. 법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	제3항제16호 법 제449조	6,000
		0,000
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샤. 법 제33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제1항제44호의2 법 제449조	6,000
두지 않은 경우	 제1항제44호의3	,,,,,,,
야. 법 제3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	법 제449조	1,000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제1항제44호의4	
를 담당한 경우		
자. 법 제3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	법 제449조	5,000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제1항제44호의4	,
를 담당하게 한 경우	,,2,0,,,222,,,2	
차. 법 제33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	법 제449조	6,000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또는 신용평가	제1항제44호의5	
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캬. 법 제339조제2항(법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	법 제449조	1,800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제3항제17호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신고		
를 하지 않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F. 법 제3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	법 제449조	10,000
치지 않은 경우	제1항제45호	,
파. 법 제34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법 제449조	6,000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제1항제46호	
경우		

햐. 법인인 자가 법 제343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제	법 제449조	10,000	
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47호		
겨.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343조제8항에 따른 자료	법 제449조	5,000	
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47호	다만, 임직	
		원의 경우	
		에는 2,000	
		만 원 으 로	
		한다.	
녀. 법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	법 제449조	10,000	
지 않은 경우	제1항제47호의2		
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70조제1항	법 제449조	10,000	
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제1항제48호		
려. 삭제 <2023. 9. 19.>			
며. 법 제418조(법 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	법 제449조	1,800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제3항제19호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벼. 법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	법 제449조	10,000	
한 대우를 한 경우	제1항제49호		